

2018년 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후보자(민간부문) 추천계획

2018. 9.



목 차

I. 포상개요

- 1. 포상규모(안) 1
- 2. 추천대상 및 자격요건 1

II. 추천기준 및 제한요건

- 1. 추천기준 1
- 2. 분야별 포상 추천제한 3
- 3.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7

III.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 1. 제출서류 8
- 2. 행정사항 9

[추천관련 서식]

- 1. 정부포상후보자추천서 14
- 2. 공적조서(정부포상/장관표창) 15
- 3. 동의서(정부포상/장관표창) 21
- 4. 이력서/인사기록카드 24
- 5. 정부포상후보자공적확인서 26
- 6. 추천자현황(정부포상/장관표창) 27

I 포상개요

1. 포상규모(안) : 총 48점

구 분	정 부 포 상(예정)				장관표창 (확정)	총계
	포 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소계		
2018년 국가기록관리	1	7	9	17	31	48

※ 정부포상규모는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장관표창은 기확정)

2. 추천대상 및 자격요건

구분	추천대상 및 자격요건
민간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와 관련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 ○ 기록관리 연구 및 정책, 제도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기록물 수집, 기록물 보존, 기록물 기증 등에 공로가 탁월한 단체 및 개인 ○ 기록관리 홍보·교육 등 기록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 ○ 기타 기록관리 인식제고 및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II 추천기준 및 제한요건

1. 추천기준

기록관리 분야에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민간인(단체)으로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된 자

가. 일반기준

- 기록관리 체계 구축 및 개선, 기록문화 조성 및 인식제고에 공헌이 탁월한 자 또는 단체

나. 자격기준(포상추천일 기준)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포장**은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단체)에게 수여
- **장관표창**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단체)에게 수여
※ 단체에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대통령·국무총리표창 또는 장관표창 수여)

다. 재포상 금지기간(전 포상 수여일로부터 금회 포상 추천일까지 기준)

《 정부포상 》

1. 정부포상을 받는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모범공무원: 표창에 준하여 3년 이상 경과 필요
2.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3. 훈장을 받는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4.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

1.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타부처 장관 표창 포함)
2.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표창의 경우, 동일 분야가 아니더라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2. 분야별 포상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 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무원 포상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횡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6)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7)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 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8)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9)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10)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다. 단체표창

- 1)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2) 정부표창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3.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가. 공개대상 및 공개내용

- 공개대상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장관표창 제외)
- 추천 후보자의 소속(도로명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추천훈격, 주요 공적 등을 공개
 - ※ 추천대상자는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위의 내용은 공개됨(단, 외교·안보 기타 해당 업무의 비밀을 요하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

나. 공개방법

- 공개방법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http://archives.go.kr>) 및 대한민국 상훈(<http://sanghun.go.kr>) 홈페이지에 공개

다. 공개기간

- 포상추천 심의 및 공적심의 등 절차를 감안하여 **15일 이상 공개**

라. 공개결과의 활용

-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및 관련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 추천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야기 등이 접수될 경우 해당 소속기관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
 - ※ 허위·비방 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접수자는 실명·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담당자 전화(042-481-6253)후 e-mail로 제출
 - ※ 정부포상 추천 이후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기록 협력과(042-481-6253)로 통보

III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목록>

서식	제출서류
① 추천서 1부 [서식 1] ② 공적조서(개인/단체) 1부 정부포상 [서식 2-1], [서식 2-2] 장관표창 [서식 2-3] ③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 3-1] 장관표창 동의서 [서식 3-2] [서식 3-3] ④ 이력서/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 4-1], [서식 4-2] ⑤ 공적확인서 [서식 5] (증빙자료첨부) ⑥ 정부포상 추천자현황 [서식 6-1] 장관표창 추천자현황 [서식 6-2]	정부포상 추천자 제출서류 ⇒ ①②③④⑤⑥ 장관표창 추천자 제출서류 ⇒ ②③④⑥

- ①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② 공적조서 ※ 공적조서 작성요령 사항(12p) 반드시 참조 바람
- ③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피추천자에게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고, 상훈관리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15일간 공개됨을 사전 고지
- ④ 이력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는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 대조 후 추천 기관장의 직인 날인
 - ※ 소속기관이 없거나 인사기록카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⑤ 국가기록관리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확인서
- ⑥ 정부포상추천자/ 장관표창추천자 현황
- ⑦ 외국인(단체) 추천 시
 - 외교부(외국군인은 국방부)와 협의한 정부포상 적격 통지문서 1부
 - 영문 공적조서 및 영문 이력서 각 1부
- ⑧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증빙서류, 언론 보도자료

2. 행정사항

가.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제출
 - 수신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 기록협력과
 - ※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경우 공문형태로 이메일(주소 담당자 문의) 제출
- 우편 혹은 직접방문으로 제출
 - 서명, 직인 등이 찍힌 원본(추천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또는 인사기록카드 사본, 동의서, 공적 입증자료)
 -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 기록협력과 포상담당자

나. 제출기한 : 2018. 9. 27.(목)까지

다. 포상수여

- 수여일 : 2018년 12월중(예정)
- 장소 및 방법 :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라. 유의사항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을 안내 바람
-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기 바람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 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 포상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포상 관련 세부기준은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수상이 취소됨
- ※ 정부포상업무지침 : 행정안전부 상훈 홈페이지 참조(<http://sanghun.go.kr>)
- 자세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042-481-6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다. 향후 일정

포상대상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포상 후보자 선정 · 포상규모 협의 	~'18.10월
포상후보자 공적조서 접수 및 공개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후보자의 소속,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 	'18.10월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추천 	'18.11월
포상 전수식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18.12월

[공적조서 작성요령]

(정부포상 · 장관표창 공통 적용)

- 공적조서는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하되, 전자적 형태의 파일(아래한글)과 날인/서명한 원본(PDF 또는 이미지 등)을 함께 제출
- 형식 : A4용지, 한글(hwp), 12포인트, 행간 160, 쪽 번호(가운데 아래)
- **추천훈격**란은 추천하는 포상훈격에 따라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추천의 경우) 또는 **'장관표창'**(장관표창 추천의 경우)으로만 기재
- 추천순위란은 기재하지 말 것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공적기간**은 기록관리 관련 분야와 관련된 전 기간을 합산하되 포상추천일을 기준으로 **최초연월일**부터 현재까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추천후보자의 **주된 공적내용을 개조식으로 압축하여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 사용을 지양하고 구체적·계량적 기술
- **공적내용 작성 시** 추천후보자의 전 공적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되 **기록관리 공적을 중점 작성**(※ **정부포상 추천의 경우에는 2,000자 이상**)
 - 조사자 항목은 소속회사의 인사 또는 소속부서의 부서장(과장)급 이상인 자가 표기(대표이사의 경우 인사담당 부서장이 작성)
 - 공적사항에는 기록관리 분야의 공적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며 추가적인 입증자료 첨부 가능
 - 과거 포상 기록은 누락 없이 구체적으로 기록(협회, 언론사 포상 제외)
-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 공적조서는 **스캔본 1부와 아래 한글파일(편집가능) 1부**를 함께 첨부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공적내용이 성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추천기관의 철저한 협조바람

추천관련 서식

- ①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② 공적조서(정부포상/장관표창)
- ③ 동의서(정부포상/장관표창)
- ④ 이력서/인사기록요약서
- ⑤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확인서
- ⑥ 추천자현황(정부포상/장관표창)

< 서식 1 >

「국가기록관리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천인	성명* (단체명)		관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직업)	
	전화*	(주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현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주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 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 ④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천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 서식 2-1 >(정부포상)

공 적 조 서(개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입		
직 업		소 속	
직 위	※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직급 또는 계급	※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추천 훈격	훈장/포장/대통령포장/ 국무총리포장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예시) 기록관리 문화 확산	공적 기간	년 개월 (2018년 8월 31일 기준)
공적요지(70자 이내)			
(작성예시)			
○로 기여함			
※ < 6하 원칙에 의거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 요함 > - 반드시 “~로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해주시시오. -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비전문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 주십시오.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인	직 위	성 명	관인

주요 경력	
년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 · ·	
· · ·	
공 적 내 용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작성예시)	
○ (제목)	
- (내용).....	
.....	
○ (제목)	
- (내용).....	
.....	
<주의사항> - 위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공적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며, 조사자께서는 본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그림, 특수문자, 기호 등은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텍스트로만 2,000자가 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최대 5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하며 사진, 그림 등 기타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며 제출한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주요학력 및 이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공적조서(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도로명주소)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e-mail)	(직장) (휴대전화)	
추천 훈격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추천 순위	공 란
공적 분야		공적 기간	※ 설립년월일부터 기재 : 예시 990501~170630
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 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공 적 내 용 (※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은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 ⇒ 표, 그림 등은 별도 증빙자료에 첨부하고 공적조서는 서술식으로 작성	
(작성예시)	
○ (제목)	
- (내용).....	
.....	
.....	
.....	
.....	
.....	
.....	
○ (제목)	
<주의사항>	
- 위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공적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며, 조사자께서는 본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자가 되시면 행정안전부의 상훈시스템에 본 공적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2,000자가 되지 않으면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하여 주시고, 표, 그림, 특수문자, 기호 등은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텍스트만 2,000자가 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 적 조 서

성 명 (단체명)				(한 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군번 (군인의 경우)	
성 별			국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 도로명 주소 기재			
직 업 (직 종)			소 속	
직 급		직 위		대외직명*
근무기간	※ 시작년월일부터 기재 (예시) 990501~160630		공적분야	
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추 천 관			2018년 월 일 (인)	

주 요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	~.....	
.....~.....	~.....	
.....~.....	~.....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포상명	년 월 일	포상명
....		
....		
공 적 사 항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8.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 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18.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 생년월일		(만 세)	
	한자	6) 군번(군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직자 <input type="checkbox"/> 정년퇴직 <input type="checkbox"/> 명예퇴직 <input type="checkbox"/> 의원면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 특 정 직	~ (년 월 일)	
8) 일 반 직	~ (년 월)		13) 교 원	~ (년 월 일)	
9) 별 정 직	~ (년 월)		14) 군 인	~ (년 월 일)	
10) 기 능 직	~ (년 월)		15) 군 무 원	~ (년 월 일)	
11) 고 용 직	~ (년 월)		16) 기타()	~ (년 월 일)	
합 계 ㉑		년 월 일			
17) 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㉒		년 월 일			
18) 실 재직기간(㉑-㉒)		년 월 일		19) 추천훈격	
2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표창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모범총리표창 이상)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국가기록관리유통」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확인서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적내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인결과	공적내용에 기재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 결과 기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요령】 추천서·공적조서의 추천인, 공적확인서의 확인자는 모두 동일인으로 할 것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이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 (‘07.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 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 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 . .

작성자 ○○○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 ② 물이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